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교통행정 및 시설운영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시정, 불합리한 제도 개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I 감 사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제53조(운영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기 간: 2023.11. 2.(목) ~ 11.15.(수) [14일간]

※ 제321회 정례회: 2023.11. 1.(수)~12.22.(금) [52일간]

□ 대 상: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기본방향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 대상업무

- '22.11월부터 '23.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II

감사위원회 운영

□ 편 성: 13명(박중화 위원장 외 위원 12명)

직 위	소속정당	성 명	사무보조 공무원명
위원장	국민의힘	박 중 화	수석전문위원 장 훈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 병 윤	의사지원팀장 민향식
	더불어민주당	김 성 준	전문위원 박준영
위원	국민의힘	경 기 문	주 무 관 배효인
		김 종 길	입법조사관 온순현
		김 혜 지	입법조사관 이성엽
		소 영 철	입법조사관 안진주
		윤 기 섭	입법조사관 김유라
		이 경 숙	입법조사관 남승연
		이 승 복	주 무 관 지연경
	더불어민주당	성 흠 제	주 무 관 이동남
		이 상 훈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임 규 호	마이크콘솔요원 (1명)

□ 감사일정 및 장소

행정사무감사 해일	대 상 기 관	증인출석대상(안)	비고
2023.11. 2.(목) 10:00	도 시 교 통 실	[9호선 1단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배현근 [PM] ·(주)더스윙 대표 김형산 ·(주)올블로 대표 최영우 ·(주)피유엠피 대표 김상훈 [백화점]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감사무엘상현 ·(주)신세계 대표이사 손영식 ·(주)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장호진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3.11. 3.(금) 10:00		[버스 사모펀드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차종현 ·Greenwich PE 대표이사 김진관 [버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장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문현 [택시]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순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동완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장재훈	
2023.11. 6.(월)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국)		
2023.11. 7.(화) 10:00	서울시설공단	-	
2023.11. 8.(수) 10:00			
2023.11. 9.(목) 10:00	(감사결과 정리)		
2023.11.10.(금) 10:0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자회사 5개 포함 (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서해철도주)	-	
2023.11.13.(월) 10:00			
2023.11.14.(화) 10:00	도 시 교 통 실	-	
2023.11.15.(수) 10:00	·도 시 교 통 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종합감사	

※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세 부 사 항

□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도 시 교 통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의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중장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서부선, 위례신사선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티머니 및 (재)티머니복지재단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주)티머니 교통카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업계획 승인, 정관변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 · 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주), 9호선 및 민자철도 관리 감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성과이윤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폐지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마을버스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운송사업의 인가·면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중앙·가로변 정류소 운영·유지관리 및 버스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및 인프라 구축 수립·지원 사항 · 서울 C-ITS 및 자율주행자동차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택시 요금제, 심야시간대 수급, 택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버스 및 택시 관련 조합에 관한 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 사항	비고
도시교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항 · 주차요금, 주차장 수급 및 확보, 주차상한제 등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 ·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복합)환승센터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자주차장 인수 및 제3자 위탁 등에 관한 사항 ·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 보행 및 자전거 축제·행사 및 도심도로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 공공자전거 운영 및 계획과 자전거 도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물류기본계획, 스마트 도시물류,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운송업, 화물터미널, 물류주선업, 물류창고업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기본·시행계획, 사고 잦은 곳 개선, 도로점용공사 소통 관련 사항 ·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확충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법령 위반차량단속, 전용차로 위반차량단속 계획 및 실적 ·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 및 교통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교통실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총괄업무 ·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 경전철 노선별 사업진행 현황 및 지연요소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사항 · 차량 수급계획·설계 및 제작관리, 차량기지 검수설비 계획 및 시공관리 등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예방,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 사항	비고
서 예 교 통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운영의 기본계획 및 서비스 향상, 안전수송 사항 · 지하철운영의 중장기 수송 대책에 관한 사항 ·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중대범죄에 대한 승객 및 역무·승무원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지하철역사 상가 임대에 관한 사항 · 전동차 도입 및 부품 수급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지상철구간 방음벽 설치 및 민원대처 현황 · 지하철 광고계약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점검 실태 및 점검주기 변경 관련사항 ·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 역세권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운행중인 지하철의 보수·보강 공사 관련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전동차 및 역사내 대기질 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역사 냉난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판매기, 게이트, 승차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점검 실태에 관한 사항 · 부채 및 공사채 발행 관련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 생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 생산적인 노사 관계 정립, 노사합동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 사건·사고 원인규명과 수습 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 · 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분사, 자회사 설립) · 승강이용 편의시설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등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연결 이동통로 공사비 산정 관련 사항 · 승강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예방 대책 사항 · 비운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검측 및 계측 장비 보유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자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서해철도(주)) · 9호선 운영부문 운영에 관한 사항 · 지하철 노선별 신규 전동차 구매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교통공사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 사항	비고
서울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예방 대책 사항 · 지하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등 추모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월드컵경기장·장충체육관·고척돔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고속도로 유지보수·청소·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계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순찰, 부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대 관리·제설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동차세 체납징수지원 및 혼잡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공동구 관리 및 상수도 검침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시설공단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수감기관 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22.11.~2023.10. 연도별 구분 작성)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집행 현황

- 2022년도~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2년도~2023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3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02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23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별도 수합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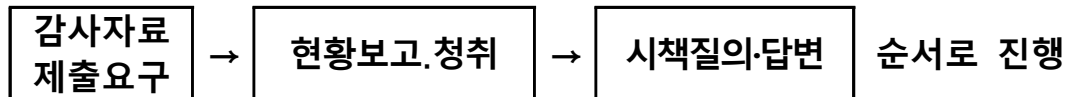
□ 감사요령

가.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통위원회 소관사무

나.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



- 필요시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다. 증인 등 출석 요구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 도시교통실장 등 도시교통실 4급이상 공무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도시철도국 4급이상 공무원
 -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임원 및 자회사 임원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등 임원
 - 서울특별시 관계 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과태료 부과(제9조), 고발의 절차(제10조), 준용사항(제11조)

라. 감사 진행순서

-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 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업무현황 보고·청취
-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통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함
-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제1항)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함
 -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함
 -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함

IV

행 정 사 항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은 서류제출요구 목록(붙임3)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23. 9.22.(금)까지** 제출
 - ※ 자료준비시간 및 감사요구자료의 사전배부에 따른 시간 필요
 - ※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경우: 감사실시 3일전까지 시장에게 요구
- 위원장은 각 감사위원으로부터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2023. 9.25.(월)까지** 의장에게(의사담당관 참조)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실시대상기관·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

나. 작성 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
- 3)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
-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2023.12. 8.(금)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 기타 사항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요구자료 인쇄본)를 감사위원에게 개별송부하고, 전문위원실로 40부를 2023.10.18.(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 요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2.11. 1. ~ '23.10.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2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2. 1. 1. ~ '22.12.31. 기준으로 작성
- 피감사기관은 수감일로부터 2일내에 수감결과(질의답변내용,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를 교통위원회에 제출

붙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대상 1부

2. 선서문(안) 1부

3.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1부

4. 감사결과 의견서 1부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일정 1부. 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대상

행정사무감사 일	대 상 기 관	증인출석대상(안)	비고
2023.11. 2.(목) 10:00	도 시 교 통 실	[9호선 1단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배현근 [PM] ·(주)더스윙 대표 김형산 ·(주)올룰로 대표 최영우 ·(주)피유엠피 대표 김상훈 [백화점]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감사무엘상현 ·(주)신세계 대표이사 손영식 ·(주)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장호진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3.11. 3.(금) 10:00		[버스 사모펀드사] ·차과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차중현 ·Greenwich PE 대표이사 김진관 [버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장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문현 [택시]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순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동완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장재훈	
2023.11. 6.(월) 10:00	도시기본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3.11. 7.(화) 10:00	서울시설공단	-	
2023.11. 8.(수) 10:00			
2023.11. 9.(목) 10:00	(감사결과 정리)		
2023.11.10.(금) 10:0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자회사 5개 포함 (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서해철도주)	-	
2023.11.13.(월) 10:00			
2023.11.14.(화) 10:00	도 시 교 통 실	-	
2023.11.15.(수) 10:00	·도 시 교 통 실 ·도시기본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종합감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서식)

【 대상기관 : 도시교통실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2022년도 예산의 사업별 내역 (건당 계약액 1,000만원 이상) <li style="margin-left: 20px;">- 총괄표 <li style="margin-left: 20px;">- 사업자 선정 입찰서류 사본 <li style="margin-left: 20px;">- 사업별 계약서 사본 <li style="margin-left: 20px;">- 계약자의 사업자등록 등본 <li style="margin-left: 20px;">- 공사완료된 사업의 예산 집행서류 사본 (현공정, 예산집행 현황) <li style="margin-left: 20px;">- 미착공사업의 미착공사유 및 관계증빙서류 (부진사업 포함) <li style="margin-left: 20px;">- 월별 예산집행 내역서 	홍길동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22.11.1.~2023.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2.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

교통위원회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 · 처리 요 구 사 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일정

구분	일 정	추진내용	소관부서	비고
사전 준비	8.28.(월)	본회의 승인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의사담당관	본회의
	8.29.(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서식 통보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9.12.(화)	상임위원회별 자체 감사 계획서 의결 후 운영위원회 제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9.12.(화) ~ 9.13.(수)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수합, 종합계획서 작성	운영위원회	
	9.14.(목)	운영위원회 회의 : 종합계획서 채택	운영위원회 → 의사담당관	
	9.15.(금)	본회의 승인 : 종합계획서 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9.25.(월)	위원회별로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제출 (마감일)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9.26.(화)	최종 수합된 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집행기관 통보	의사담당관 → 市 기획담당관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추석연휴 및 휴일 고려
10.18.(수)	서류(자료)제출 요구 자료 인쇄본 시의원 배부 ※ 피감사기관에서 시의원에게 개별 배부	피감기관 → 각 위원회	감사 15일전	
감사 실시	11.2.(목) ~ 11.15.(수)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사후 관리	~12.8.(금)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예정)
	12.8.(금) ~ 12.15.(금)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 수합,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운영위원회	
	12.21.(목)	운영위원회 회의(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채택)	운영위원회	(예정)
	12.22.(금)	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 2023.11.1.(수)~12.22.(금) <52일간>

※ 상기 일정은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